

보도시점 2026. 9. 30.(수) 11시
2026. 10. 1.(목) 조간

배포 2026. 9. 30.(수) 06:00

럼피스킨 제2종 전환에 맞춰 방역조치 조정과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의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과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마련하여 시행* 한다고 밝혔다.

* 럼피스킨 방역조치 조정: 10.1일,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9.29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럼피스킨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한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방역조치를 정비하고,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에 동물보건사를 추가하고 교육기관을 확대하는 등 가축방역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럼피스킨의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에 맞춰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럼피스킨의 제2종 전환에 맞춰 일시이동중지 명령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역학조사 또는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해 최대 70일까지 살처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제2종 전환 이후에도 의심축 조기 신고, 매개곤충 방제 등 렘피스킨 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를 지속한다.

가축방역사 위촉 자격범위와 교육기관을 확대한다.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역인력으로, 이번 개정으로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범위를 확대*한다.

* (현행) 축산산업기사,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등 전공졸업한 자 등 → (확대) 동물보건사 추가

또한, 가축방역사 위촉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실시기관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에서도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기회를 넓힌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질병 위험도에 맞는 방역으로 농가와 현장의 부담은 낮추고, 전문인력의 참여 기회는 넓혀 가축방역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역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농가와 방역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욱	(044-201-2511)
		담당자	사무관	박성대	(044-201-2519)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①-----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 ----- ----- ----- ----- ----- ----- ----- ----- ----- ----- ----- ----- ----- ----- ----- ----- -----.
②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가축방역사)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u>자는</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자로</u> 한다.	제10조(가축방역사) ① <u>법 제8조제4항</u> ----- ----- <u>사람은</u>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u>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신 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
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 축산학 · 생물학 또는 보건
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을 가진 자

3.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
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를 6
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
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한 경험이 있는 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자격을
갖춘 자중 방역본부가 실시하는
2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

1. -----

-- 사람

1의2. 「수의사법」 제16조의2
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

사람

4. -----

----- 사람

②-----
----- 제1항에 따
른 -----
---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

한 자를 가축방역사로 위촉한다.

<신 설>

<신 설>

③ ~ ⑤ (생 략)

제14조(혈청검사 결과보고)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혈청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 ⑥ (생 략)

⑦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이수

한 사람을

1. 방역본부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기관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혈청검사 결과보고) ① 특별시·통합특별시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특별시·통합특별시

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생 략)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
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의2. 럼피스킨병

2.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
조제1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
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우
폐역·구제역·럼피스킨병·
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
·뉴캐슬병·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

2. 제2종가축전염병: 브루셀라
병·결핵병·소해면상뇌증·
돼지오제스키병·돼지인플루
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
이러스만 해당한다)·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스크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

-----.

1. 제1종 가축전염병: -----
-----구제역-----

2. 제2종 가축전염병-----
-----소해면상뇌증·
럼피스킨병-----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